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36 발의연월일: 2020. 12. 2.

발 의 자:천준호ㆍ이용선ㆍ진성준

이소영 · 정일영 · 임호선

홍정민 · 홍기워 · 허 영

김승원 · 이규민 · 오영환

황운하 · 고민정 · 윤미향

양기대 • 이원욱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재산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 국회의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국회의원 임기 직전까지 재직하던 기업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경우임.

이처럼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원직은 소관 업무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등록대상재산과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및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백지신탁한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48조, 제48조의2,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155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3(의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에 그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을 포함한다)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의4(의원의 재정적 이해충돌 여부의 확인) ①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의 등록 또는 변동 사항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대상재산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사항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의장에게 재정적 이해충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대상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의원의 재정적 이해충돌 여부를 제4항에 따른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단의 의견을 들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등록대상 재산을 매도하거나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소속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제1항의 재정적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원의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이해충돌 확인 요청 및 확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2(직무 공정성 우려가 있는 위원의 선임 제한) ① 의장과 교 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상임위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처음 신탁된 주식이 6개월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소속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개선한다.
 - 1.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한 경우
 - 2.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한 경우 또는 같은 항의 기한까지 등록대상재산을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8조의2제1항의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상임위원이 직 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8조제8항 중 "제58조의2"를 "제58조의3"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제58조의3으로 하고,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청원 등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에 참여할 수 없다.

- 1. 위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 2.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 3.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증 언·감정 등을 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4.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감사·수사·조사를 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5. 그 밖에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② 위원회는 소속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위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회피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정적 이해충돌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등록대상재산의 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의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임기가 개시된 의원은 제29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 서 한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 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을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국회 법」 제58조의2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3(의원의 민간 부문 업
	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에 그 활동 내역을 임
	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
	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사외이사로 재직한 것
	을 포함한다)하였던 법인·단
	체와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
	<u>우 그 업무 내용</u>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u>영리행위의 내용</u>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

<신 설>

을 공개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의원의 재정적 이해충 돌 여부의 확인) 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의 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를 완 료한 경우에는 등록대상재산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 시하여 지체 없이 의장에게 재 정적 이해충돌(의원이 소속 상 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등록대상재산과 관련되 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재정적 이해 충돌 여부를 제4항에 따른 재 정적 이해충돌 심사단의 의견 을 들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해당 등록대상재산을 매도하거나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소속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등록대상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의 재정적 이 해충돌 여부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원의 재정적 이 해충돌 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이해충돌 확인 요청 및

 확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4항

 에 따른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삭 제>

 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
 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선 설>

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8조의2(직무 공정성 우려가 있는 위원의 선임 제한) ① 의 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임위원은 「공직자윤리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처음 신 탁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소속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요 청하여야 한다.

-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은 상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하거 나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 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에 따라 개선한다.
- 1.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변 경을 요청한 경우
- 2.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상임 위원회 변경을 요청한 경우 또는 같은 항의 기한까지 등 록대상재산을 매도하지 아니 한 경우
- 3. 제58조의2제1항의 사유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상임위 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⑦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 (생 략)
 -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
 ⑧ ------제58조의3

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⑩ (생 략) <신 설>

⑨·⑩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청원 등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및 발언에 참여할 수 없다.

- 1. 위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 2.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 3.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증언·감정 등을 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4.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에 본인이 감사·수사·조사를

<u>제58조의2(헌법재판소</u> 위헌결정 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생 략)

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그 밖에 위원의 사적 이해관 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 칙으로 정하는 자 ② 위원회는 소속 위원이 제1 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하여 해당 <u>안건에 대한 표결</u> 및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 여 해당 위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하여 야 한다. 제58조의3(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현행 제58조의2와 같음)

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16. (생략)

<u>.</u>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회피 사유가 있음을 알면
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u>때</u>

5. ~ 16. (현행과 같음)